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패러다임 전환

- 입법 예고 후 제19대 국회에 상정 예정, 건설기술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박 하 준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장

1980년 이후 건설산업은 국제화·개방화되고 기술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환경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국내 건설산업은 그동안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건설 기술 수준은 그에 못 미치고 있었다. 여기에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 등과 같은 부실 시공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7년 2월 '건설공사 제도 개선 및 부실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1987년 10월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 팔당대교, 1992년 창선대교, 1992년 신행주대교, 1993년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일련의 대형 건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그때마다 건설공사 부실 방지 대책을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왔다.

이제는 그간의 노력으로 국내 건설 기술의 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으며, 이전과 같은 부실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건설산업은 국내 건설투자 축소에 따른 건설 시장 축소라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들은 새로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건설기술 용역 분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기술 용역 분야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건설 기술의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 제도 글로벌화, 우수 기술인력 양성 기반 마련, 건설 엔지니어링산업 지원 강화,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등을 주요 추진 전

략으로 설정해 관련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건설기술진흥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우선 종전 규제와 관리 중심에서 건설 기술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과 지원으로 법령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제명부터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한다. 이와 더불어 법의 목적도 건설 기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서 건설 기술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건설 기술의 수준 향상과 건설 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건설 기술과 관련된 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

기술에 대한 정부의 상위 계획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건설기술용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해외 진출 지원 및 교류 지원,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현재도 관련된 내용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해양부 장관이 건설기술 용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시책의 내용에도 산업의 고도화, 해외 진출 촉진을 추가하였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한 시책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 기술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해외 건설 기술 및 시장 정보 제공, 건설 기술 인력 정보의 제공,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 교육 등을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 업역 체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건설기술용역 업역도 단일화한다. 현재 설계, 감리 등의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업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우 한 가지 면허로 제한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업역별로 별도 등록 및 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일 업체임에도 업역

별로 부서를 구분하여 상호간 기술 교류가 곤란한 점 등 분산된 업역 체계가 종합적인 기술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함에 따라 설계나 사업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적 등록 기준 등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 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통합함에 따라 현행 책임감리 등을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한다. 현행 책임·시공·검측 감리는 업무의 내용을 한정함에 따라 발주청에서 건설사업 성격에 적합한 공사관리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여 유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관련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책임감리 의무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과 같이 발주청의 공사 감독 권한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로 의무 발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부 감리와 관련한 업무 내용도 변경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책임감리를 수행한 경우 관련 보고서를 감리원이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제재를 감리원이 받도록 되어 있

던 사항을 계약 당사자가 감리전문회사임을 감안하여 개정안에서는 감리원이 아닌 계약을 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토록 하고 그에 따른 제재도 해당 업자가 받도록 하였다. 감리원의 재시공 및 공사 중지 명령 권한도 한정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감리원이면 누구나 공사 중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권한은 발주청 감독의 고유 권한임을 감안하여 개정안에서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책임 기술자에게로 한정토록 하였다.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책임감리와 감리원 관련 정의 등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감리와 관련된 정의의 삭제로 감리 업무의 폐지를 우려하기도 하는데 책임감리 등의 정의는 업무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감리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에 포함된다.

### 기술 인력 양성 체계 강화

건설 기술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설 기술 인력에 대한 패러다임도 관리에서 양성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일정 자격만 있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 기술자, 감리원, 품질 관리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건설 기

경영 정보

술자로 통합한다. 또한, 건설 기술자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교육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건설 기술 인력의 관리 체계를 통합함에 따라 건설 기술자 신고, 업무 정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 등 국가간 상호 협약이 증가함에 따라 학·경력 건설 기술자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건설 기술자 상호 인정 근거도 마련하였다.

업체에 의한 자발적인 건전한 건설공사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업자에 대한 지정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의 지정은 발주청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용역·시공 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발주청 단위로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발주청에서는 용역·시공 평가만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업체 영업 부담 완화**

업체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과 연관성이 낮은 의무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도 완화한다.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 양

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도록 하였다.

관련 협회에 대한 규정도 통합하고 업무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업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협회의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행 감리협회의 업무로 되어 있는 공제 업무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 법인을 분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운영상 미비 사항 반영**

이 밖에 그간 운영 과정에서 미비하였거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우선 발주청의 체계적인 공사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감독 업무 수행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건설공사감독업무지침’이 있으나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발주청마다 감독업무 내용이 차이가 있어 관리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가 부실한 경우 관련 기술자 등을 제재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나 업무 내용이 미비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품질 검사 대행 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도 법 체계에 맞추어 법률에 규정하였다. 건설공사 실적공사비와 품셈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건설 신기술 실적이 PQ 등에 활용돼 입찰시 낙찰에 영향에 미치는 등 중요하게 활용되나 허위 제출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코자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12년 제19대 국회에 제출**

이번 개정안은 금년 19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업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대폭 변경하는 것인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정안 통과 후 1년 이후 시행토록 규정하였다.

「건기법」 전부 개정안에는 건설 기술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전환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내의 건설제도를 해외 시장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경쟁력을 쌓아 이를 그대로 해외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적인 방향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국내 건설 기술과 관련 산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CERIK